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업무 관리 규정

(규정제정 2023.07.23.)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육상연맹 정관 제2조 제2항 제3항 과 제4조 제1항 1호 3호에 따라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관련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경기대회'(이하 "국제대회"라 한다)란 세계육상연맹(World Athletics, 이하 "WA")과 아시아육상연맹(이하 "AAA") 및 기타 공인된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 주관하는 육상경기대회로서 유치신청도시의 선정에 관한 권한이 국가연맹(KAAF)에 있거나 유치신청에 대한육상연맹의 보증 또는 승인을 필요로 하는 대회를 말한다.
2. '유치희망도시'란 국제대회의 국내유치를 희망하여 대한육상연맹(이하 "육상연맹"라 한다)에 '유치신청도시' 선정을 신청한 단일 또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를 말한다.
3. '유치신청도시'란 육상연맹의 선정 절차를 거쳐 제1호의 국제스포츠기구에 한국을 대표하여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자체를 말한다.
4. '유치도시'란 국제경기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가 유치신청도시 중 유치(후보)도시로의 권한을 부여한 지자체를 말한다.
5. '개최도시'란 유치도시 중 주최 국제스포츠기구의 절차에 따라 개최지로 선정되어 개최협약을 체결한 지자체를 말한다.
6. '대회유치위원회'란 유치희망도시, 유치신청도시 및 유치도시가 대회 유치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을 말한다.
7. '대회조직위원회'라 함은 개최도시가 대회 개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8. '국내전국육상경기대회'란 대한육상연맹 및 전국연맹체가 주최 주관하는 「전국규모 국내경기대회 관리운영지침」제2조가 적용되는 대회를 말한다.
8. '국제경기대회 유치 평가편람'(이하 "평가편람"이라 한다)이란 유치희망도시의 유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대한육상연맹 회장이 정하는 평가항목 및 기준 을 수록한 것을 말한다.

제 3 조(기본원칙) 국제경기대회의 국내유치가 올림픽운동의 확산 및 세계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육상경기의 활성화에 공헌하기 위해 유치신청도시 선정을 위한 기본원칙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유치희망도시는 올림픽 운동의 기초인 페어플레이 정신에 따라 정정당당히 경쟁에 임하여야 한다.
2. 육상연맹은 국제경기대회 개최 역량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유치신청도시를 선정하되,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유치희망도시 간 경쟁은 공정해야 하며, 유치희망도시를 선전하거나 이를 비판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2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지자체 또는 위원회는 대회 유치 및 개최 관련 업무수행에 관하여 육상연맹이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 4 조(개최계획서의 제출 등)

- ① 유치희망도시는 육상연맹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국제경기대회 개최계획서
 2. 이행각서

3. 시설물 사용허가서

② 제1항 제1호의 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치 대회 명칭, 개최일시, 장소 등 대회개요
 2. 유치 목적 및 취지, 유치를 위한 여건 및 유치계획
 3. 예상 참가인원, 대회 소요인력 및 대책, 내·외빈 초청범위
 4. 해당 대회 유치에 소요되는 자원 및 자원 조달계획
 5.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경기장, 숙박, 선수촌 및 그 외 대회 관련 시설내역(신규·기존 시설물 활용계획 포함)
 6. 예상 경기력, 경제·사회적 기대효과
 7. 잔존시설물 이용·관리 계획
 8. 교통인프라, 수송수단 현황
 9. 주요 국제대회 개최경험
 10. 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11. 미디어 인프라 등
 12. 기타 해당 대회 유치 관련 사항으로 육상연맹이 정하는 사항
- ③ 유치희망도시는 해당 도시에 대한육상연맹의 평가활동 및 제반 정보수집에 소요되는 경비로 부담금 2,000만원을 납부 하여야 한다. 이 부담금은 육상연맹의 수입금으로 처리되며, 유치신청도시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 ④ 대회유치 신청은 해당 시도 육상연맹을 통하여 대한육상연맹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연맹은 2개지역이 복수로 신청할 경우 1개 지역만 선정하여 대한육상연맹에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선정절차)

- ① 유치신청도시는 국제대회선정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 ② 국제대회선정위원회는 평가보고서를 심의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 ③ 이사회는 국제대회선정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를 보고받고, 유치신청도시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1. 각 유치희망도시 설명(30분) 후 질의응답(20분) : 각 유치희망도시의 공식대표는 4명으로 하고, 참관인의 수는 육상연맹이 정한다.
 2. 평가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
 3. 이사회의 의결 또는 무기명 비밀투표
 4. 결과 발표
 5. 유치신청도시와 육상연맹의 협약서 체결

제 6 조(평가위원회의 구성) 국제위원회는 유치희망도시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5인으로 총 7명 이내로 구성한다.
2. 평가위원회는 육상연맹 이사 2인, 시도 소속 1인, 육상연맹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인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 1인은 회장이 호선한다.

제 7 조(평가위원회의 임무)

- ① 평가위원회는 유치희망도시가 제출한 대회개최계획서를 평가편람에 제시된 평가항목 및 기준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치희망도시에 대한 설명 요구 및 현지조사
2. 스포츠 측면 외에 문화행사, 숙박, 교통, 의료, 환경 등 대회개최 관련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요구 및 수집·분석

제8조(현지조사)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유치희망도시에 대한 평가는 현지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현지 조사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위원은 제3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조사에 앞서 구성원, 일정 및 조사항목 등을 유치희망도시와 사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회의 유치희망도시 현지 조사는 도시당 2회 이내로 하되 회당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결정으로 2일의 범위 안에서 1회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시도연맹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현지 조사는 유치희망도시 당 1단체 1회로 하되 기간은 2일 이내로 하고 조사인원 수는 시도연맹 당 3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시도연맹은 현지 조사 후 1주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에 현지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평가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평가위원회는 개최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유치희망도시에 대해 평가하고 이에 따른 종합평가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여 이를 육상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평가위원회가 유치희망도시에 추가로 자료 보완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최종자료를 접수한 날을 개최계획서를 접수한 날로 간주한다.

제10조(협약서) 육상연맹과 유치신청도시 간에 체결하는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협약 당사자는 이 규정에 따른 협약서를 준수해야 한다.

1. 해당 국제스포츠기구가 정한 제반 규정 및 윤리강령의 준수
2. 유치신청도시로서 해당 국제스포츠기구에 제출할 대회개최신청서를 사전에 육상연맹에 제출, 승인 획득
3. 육상연맹과 사전협의를 통한 대회 유치위원회 구성 및 유치활동
4. 육상연맹과 사전협의를 통한 대회조직위원회 직제 입안, 임원 선임 및 직원 파견을 포함한 구성
5. 대회유치위원회 및 대회조직위원회는 창립총회 등 회의 개최 전 육상연맹과 주요 안건을 사전협의
6. 해당 국제스포츠기구와 체결한 계약서상의 공동 스포츠마케팅 프로그램과 관련된 육상연맹의 수익 비율 준수 및 대회종료 후 발생한 잉여금 배정에 있어 육상연맹의 수익 보장
7. 대회조직·운영의 분기별 보고 및 대회종료 후 청산 결과 보고 의무
8. 기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의

제11조(제재) 육상연맹은 제2조 2호부터 7호까지의 지자체 또는 위원회가 관련 법령 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경고 조치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 할 경우 또는 위반사항이 중대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으며 제재절차 및 세부 제재 사항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1. 유치희망도시의 유치신청도시 신청 반려
2. 유치신청도시의 유치신청도시 자격 철회
3. 유치도시 및 개최도시(관할 시·군·구)에 5년 범위 내에서 국제경기대회, 3년 범위 내에서 대한육상연맹이 주최·주관 국내전국육상경기대회 및 전국규모연맹체 대회 유치 신청 자격 제한

제12조(경비부담) 제8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현지조사와 시도연맹의 현지 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육상연맹이 유치희망도시 부담금에서 지급한다.

제13조(평가위원 등의 준수사항) 평가위원회 위원, 시도연맹의 현지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 및 유치신청

도시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유치희망도시로 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국제스포츠기구의 국제경기대회 개최도시 선정규정 및 절차를 준용하되, 불분명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2023. 0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2023. 07. 26)부터 시행한다.